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33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김태선 · 장철민 · 허영
허종식 · 김주영 · 정춘생
윤후덕 · 박민규 · 박홍배
한민수 · 이해민 · 강준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 인원내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의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애인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다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를 “다른”으로 한다.

1.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2.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22조의 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u> <u><신설></u>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 1. <u>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u> 2. <u>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u>
<u><신설></u>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4항에 <u>따른</u> 도급의 기준, <u>그 밖에</u> 부담금 감면의 요건·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⑪ ----- <u>따른</u> ----- ----- ----- -----.
--	---